##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

[시행 2017. 12. 28.] [조례 제4413호, 2017. 12. 28., 일부개정]

경상남도(자치행정국 행정과), 055211388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4, 10, 10, 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참전유공자"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6. 11. 03.>
- 2. "참전자단체"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참전자 단체로 한다. <개정 2016. 11. 03.>
- 제4조(보조금 지원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참전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 정 2014. 10. 10. >
  - 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  - 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
  - 3. 모범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
  - 4.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참전자단체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 10. 10. >
- **제5조(참전명예수당)**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8. 13., 2014. 12. 26., 2016. 11. 03., 2017. 12. 28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, 지급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1. 03.>

제6조 <삭제 2016. 11. 03. > <삭제 2016. 11. 03. >

부칙 <제3956호, 2014. 12. 26. 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9. 8. 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칙<조례 제3930호, 2014. 10. 10. \(\( \beta \) 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부칙<조례 제3956호, 2014. 12. 26. >(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)

## **제1조**(시행일)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## 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부터 (43)까지 생략

(44) 「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및 제6조 중 "「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」"를 "「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(45)부터 (51)까지 생략

부칙<2016. 11. 03.>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7. 12. 2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